

아동 성폭행 관련 기사 안전한가

「The Spectator」는 지난 2월 자신의 두 의붓 손자를 포함해 여러 아동을 성폭행하고 그와 관련된 260여 장의 음란한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한 예술 사학자에 대해 보도했다. Charlotte Metcalf 기자는 기사의 말미에 이 기사가 사건 당사자인 Pat 가족의 협조 하에 쓰여 졌으며, 가족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그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어린이 성폭행 관련 보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규정은 16세 이하의 아동과 관련된 성폭행 보도는 반드시 아동의 이름을 익명처리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원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공표할 수 없으며,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근친상간(incest)’이라는 단어도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06년 12월 「Sunderland Echo」는 이러한 보도 준칙을 어긴 것에 대해 2천5백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피해자임이 특정된 당사자에게도 2천5백 파운드를 보상해야 했다. 신문은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처리 하였으나, 주위 사정을 고려하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자세히 묘사하였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률 에디터인 Mike Dodd는 기자들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만약 가족 내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에 관해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후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는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사가 피고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나이를 적시한다면 독자들은 이것으로 사건 당사자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과 관련된 범죄일 경우 학생, 소년, 10대 등으로 단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단순히 사건 발생일과 주소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The Spectator」는 피해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두 의붓 손자가 피해자라는 점을 적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1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진 보도에 한정된다.

(Press Gazette 2008년 7월 25일자) □

기사 제목으로 명예훼손 마이니찌신문에 110만 엔 배상명령

마이니찌(毎日)신문의 기사와 뉴스사이트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야마다(ヤマダ)전기가 마이니찌신문사에 1,2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은 2008년 9월 12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보낸 배신(配信)기사의 제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11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마이니찌신문은 2007년 3월 30일자 조간(오사카본사 발행) 등에서 야마다전기의 하청업자가 리사이클가전(家電)을 중고품판매·수출회사에 편법유통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뉴스사이트에서도 ‘야마다전기 : 불요(不要)가전

1,600대 '편법유통'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배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에서는 제목만을 열람하고,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는 독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사이트의 제목 단독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제목은 편법유통의 주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독자는 통상 야마다전기가 편법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지적, 야마다전기의 신용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에 배신되는 뉴스에 대해서도 "통신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문을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도 용이하게 상정(想定)된다"고 지적,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한편 신문기사에서는 "제목과 리드부분, 본문을 읽는 것이 통상적인 읽기이므로, 기사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평가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9월 23일자) □

블로그의 통신기사 무단인용 둘러싸고 논쟁 한창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블로그 대국 미국에서는 요즘 뉴스 블로그에 의한 통신사 기사의 무단 인용을 둘러싸고 저작권침해 논쟁이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AP통신에 대해, 블로그 측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공정한 사용의 범위 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AP는 블로그에 대한 「인용지침」을 작성할 방침이나, 표현의 자유와도 관련되는 문제여서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논쟁은 미국의 약 1,500개 신문사가 가맹하고 있

는 세계 유수의 통신사인 AP에 의해 시작되었다. AP는 2008년 6월 초 인기 있는 뉴스블로그 「드래지·리포트 (ドラッジ・リポート)」에 대해, 기사의 일부를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

이 블로그의 주인인 캐던헤드 (キャデンヘッド) 씨는 "AP는 우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경계선을 명시해야만 한다"면서 삭제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내세워 교섭을 시작했다.

한편 많은 뉴스 블로그로부터 비판의 집중포화에 직면한 AP는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인용이 가능한 범위 등을 명시한 지침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작성, 블로그 측에 제시한다는 선에서 화해했다.

그런데 문제의 배경은, 아마추어 기자들이 만드는 「소셜뉴스사이트 (ソーシャルニュースサイト)」등 뉴스전문 사이트나 블로그가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소셜뉴스사이트 열람자는 월 2,500만 명 이상이다. 정치를 테마로 하는 「데일리·코스 (デーリー・コス)」, 예능가십을 취급하는 「고커 (ゴカ)」등의 블로그는 전문가들의 이용이 많아 세론(世論)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드래지·리포트」는 당초 클린턴 전 대통령의 화이트하우스 실습생과의 스캔들을 폭로한 유명사이트 「드래지·리포트」를 비꼬아서 풍자한 작은 블로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9,000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는 인기사이트로 성장했다.

AP는 미국의 약 1,500개 신문사가 가맹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통신사로서, 야후(yahoo) 등 인터넷용으로도 유료로 기사를 배신했고 있는데 블로그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적다고 보아 지금까지 기사의 인용을 묵인해 왔었다.

(신문협회보 2008년 9월 23일자) □

Murat사건 변호사, 'Pack - dog' 저널리즘 문제 지적

한 변호사가 자신의 소송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어 고통을 받게 만든 언론사의 편집인들을 초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 의뢰인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의 편집인들을 초대한 Louis Charalambous 변호사는 'Simons Muirhead and Burton' 법률회사 소속으로, 100여 건의 명예훼손 기사와 관련해 Murat의 변호를 맡고 있다.

Murat은 자신이 아동 유괴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주 자신에게 피해를 준 11개 타블로이드 신문들과 6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또 해당 신문사들은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지면에 사과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타블로이드 신문은 「The Sun」, 「News of the World」, 「The Daily Mirror」, 「The Sunday Mirror」, 「Daily Star」, 「Daily Record」, 「Daily Express」, 「Sunday Express」, 「Daily Mail」, 「Evening Standard and Metro」 등으로 주요 신문 대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나 올해 초 자신들의 기사에 대해 사과기사를 실은 「The Scotsman」은 손해배상을 면제받았다.

Charalambous 변호사는 “사과와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번 사건의 끝이 아니다”면서 “이번 기사들로 인해 1천5백만 독자의 신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 언론사에는 더 큰 타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The Sun」, 「Mirror」, 「Express and Star」 등은 잘못된 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독자

들은 신문이 내보내는 기사들을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신문사들의 명예훼손적 보도를 여과 없이 따라 보도하는 'Pack-dog' 저널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의뢰인과 가족은 'Pack-dog' 저널리즘의 먹잇감이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의뢰인의 어린 딸은 외출할 때 코트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언론사 편집인들을 초대해 함께 차를 나누면서 관련 기사와 사진들이 어떻게 Murat 가족을 고통 받게 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haralambous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있고 나서도 신문 그룹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문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 영국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게 단순히 해당 언론사에 권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규제 기관인 Ofcom처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기구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언론사 분위기에서는 내부 변호사가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더라도 'Pack-dog' 저널리즘의 속성 하에서는 반영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들은 결국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결코 언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Murat과 그의 가족을 8개월 동안 무료 변호했던 Max Clifford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McCanns은 한 신문사와 5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 합의를 했으며, Murat과 관련한 기사가 최근 논란이 된 McCanns의 기사보다 더욱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은 훨씬 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McCanns

이 「Express Newspapers」를 상대로 한 소송과 Max Mosley가 「NoW」를 상대로 한 소송보다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많은 언론 사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잘못된 보도가 정정되어야 하는데, 언론의 회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8년 7월 28일자) □

일본 신문들 실명·익명 보도 판단 엇갈려

일본 오사카(大阪)시 비디오점의 방화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도를 실명으로 하느냐, 익명(匿名)으로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일본의 각 신문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익명으로 보도한 신문사들은 비디오점이 풍속점(風俗店)이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인권, 프라이버시, 유족 감정 등을 배려해 얼굴 사진의 게재에도 신중하게 대응했다.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0월 1일 밤 경찰이 발표한 신원판명자 4명에 대해, 2일자 조건에서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교도(京都)신문은 실명으로, 마이니찌(毎日), 산케이(産經), 고오베(神戸)신문은 익명으로 각각 보도했다.

실명 보도한 신문사들은 실명을 쓴 이유에 대해 비디오점이 간이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태를 근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시히신문은 “방화된 비디오점이 풍속점이 아니며, 사건 당시 도 실질적으로 호텔 대용으로 이용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곳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불명에

에 해당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오사카시나 경찰에 문의전화도 많았고, 안부 정보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의미에서도 공익성이 높다”는 견해도 밝혔다.

피해자의 사망 상황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현저하게 불명예라고 생각될 때는 익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내보도지침을 갖고 있는 요미우리신문도 “영업형태로 보아 ‘익명을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15명이나 사망한 보기 드문 중대사건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실명표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토신문(사회보도부장)도 “갈피를 잡지 못했으나 실태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마이니찌신문과 산케이신문은 당초 이 상점에 「성인비디오극장」이라는 간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익명을 선택했으며, 산케이신문은 풍속점의 성격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마이니찌신문은 희생자나 유족이 호기심의 시선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케이는 8명의 신원이 추가로 판명된 2일자 석간부터 취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숙박목적이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익명에서 실명으로 바꾸었으며, 마이니찌는 3일자 조건부터 익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의 배신(配信)은 실명이었으나 고오베신문은 유족들을 배려하여 익명으로 보도했다.

얼굴사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신중한 대응을 취했다. 전국지는 오사카본사판에서 현장에 걸린 사진이나 피해자의 자택에 걸려있는 유영(遺影)을 한 사람 정도 게재했으며, 아사히 오사카는 10일자 조건에서 희생자를 추적하는 기사에서 한 사람의 얼굴사진을 게재하는 정도였다.

(신문협회보 2008년10월14일자) □